

#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와 法規範

徐 庚 林\*

## 目 次

- I. 序
- II. 漁村共同體의 自然的·經濟的 環境
- III.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
  - 1. 個人間의 關係構造
  - 2. 集團構造
  - 3. 價值體系
- IV. 漁村共同體의 法規範
- V. 結 語

## I. 序

國家權力에 의하여 支持되는 法만을 「法」이라고 觀念한다면, 이러한 法과는 無關하게, 또는 獨自의 領域을 形成하여 「法 없이 사는」 農漁村의 生活秩序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法社會學 내지는 法人類學的 觀點에서 重要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法 없이 사는 사람」이란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며, 法이 없는 社會도 存續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은 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데, 이것은 실은 規範을 잘 內面化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며,<sup>1)</sup> 또 이 경우의 「法」이란 主로 國家制定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副教授

1) 李璣鉉 外, 「社會學의 理解」, 法文社, 1982, P. 453.

法現象을 觀察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家라는 要因이 포함된 法概念에 限定시켜, 그것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처음부터 法概念을 規定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共同體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 社會規範을 일단 널리 法概念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共同體의 힘이란 반드시 國家의 힘이 개재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 社會의 構成員 個個人을 超越하는 共同體全體의 힘, 예컨대 「동네 매」와 같은 物理的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 外에도 心理的 壓力에 의해 構成員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다.

現存의 어느 社會의 規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 그 社會는 어떤 社會構造( social structure )를 가지고 있나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社會構造라는 말이 學者에 따라 意味하는 바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一般的으로 個人이 행동할 수 있는 範圍나 行動樣式을 정해주는 社會的 定義 내지는 틀로 理解하고자 한다. 모든 社會構造는 두 사람 이상의 社會的 相互作用에 의해서 形成되며, 이 社會的 相互作用은 그 社會的 關係가 어떠한지나에 달려 있다. 여기서 社會的 關係란 두 사람 사이의 人間關係가 각자의 地位와 役割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豫測이 可能하고, 安定的인 相互作用의 類型을 이를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컨대, 어느 社會의 構造 내지 構成要素는 具體的인 사람이 아니라 그 役割에서 파악된다. 사람은 同時에 수많은 役割을 담당하며, 이 役割은 결국 社會의 으로 規定된다. 役割은 일정한 權利와 義務로 構成되며, 그 內容은 文化의 內容, 특히 價値와 規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法 規範도 役割期待를 形成하는 한 因子로서 궁극적으로는 役割期待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典型的인 漁村인 M島의 社會構造와 法規範과의 相互關係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섬에 체재하면서 섬사람들의 生活相을 깊이 觀察하는 參與觀察( participant-observation )의 方法이 最善이겠으나, 時間의 制約上 주로 文獻에 의지하면서 의심이 가는 部分에 대하여 探問하였고,<sup>2)</sup> 특히 崔大權 教授의 「農村의 社會構造와 法」이라는 論文을 비교하면서 漁村의 規範生活에 관한 自然的·經濟的·社會的 條件을 규명하고 그 規範의 社會科學的 根據를 밝히고자 한다.

2) 이 論文을 쓰는데 李起旭, “島嶼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人類學論集」 서울大學校 人類學研究會, 1984. 에서 많은 示唆를 얻었고, 또 그의 助言에 힘입은 바가 크다.

## Ⅱ. 漁村共同體의 自然的·經濟的環境

M島는 濟州島의 附屬 島嶼로서, 韓國의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는 고립된 섬이다. M島는 濟州本島에서 11 km, 인근 K島와는 5.6 km 떨어져 있는 孤島로서 總面積 0.3 km<sup>2</sup>, 海岸線의 總長이는 1.5 km에 不遇하다.

이 섬은 全體가 현무암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海역 역시 많은 현무암이 뒤덮여 있어서 海藻類나 貝類, 기타 海産物의 最適 棲息地를 形成하고 있다. 섬의 동쪽 海岸은 太平洋의 거센 파도에 의해 끊임없이 侵蝕되어 39 m나 되는 벼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벼랑은 서쪽 海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쪽과 유사하며, 북쪽과 남쪽만이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海水面과 맞닿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역시 岩石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어 船舶의 通行이 사실상 不可能하다. 이와같이 험난한 地形과 強風으로 인한 氣候의 制約 때문에 M島는 外部 地域과의 交通이 어렵고, 따라서 住民들의 生計活動도 전적으로 島嶼 內의 資源利用에 限定되고 있다.

M島의 人口는 總 25 家口에 男子 66 名, 女子 42 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1981 年 基準). 男子가 女子에 비해 많은 理由는 男子 中 20 名이 非常住人口로서 도서 경비대와 등대직원 등이 있기 때문이다. 常住 人口는 M島의 土地 및 주변 海域의 資源에 대한 所有權 및 利用權을 갖고 있다는 意味에서 非常住人口와 區別된다. 이 原住民들은 事實上 이 섬의 住民으로서 마을의 自治的인 事業을 計劃하고 行使하는데 意思決定을 하고, 새로 轉入하여 오는 사람들의 迎入如否를 決定하기도 한다. 原住民의 人口는 20 家口에 男子 46 名, 女子 36 名으로 되어 있고, 男子 中 6 名이 漁業에 종사하며, 女子 中 18 名이 海女로서 이 섬의 資源利用을 통한 生計活動에 核心的인 役割을 하는 사람들이다.

M島 內의 居住 人口數는 50 名 정도로서 他地域에 轉入해 나가므로 항상 一定한 數로 유지되고 있다. 人口 移動의 原因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島內에는 없고, 특히 資源이 빈약하여 男子들의 主된 生計活動인 고기잡이가 힘들어 外地로 나갈 수 밖에 없다.

原住民들은 인근 海岸의 資源에만 依支하여 生活하여야 하고, 또 이 資源은 限界가 있으므로, 이것을 意識하여 가급적이면 이 資源을 利用하는 人口를 줄이려는 試圖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섬에 特有的한 鄉約은 오랜 세월을 걸쳐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살아있는 法」으로서 그것의 要諦는 限定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人口를 줄이려는 戰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點에 대해서는 後述한다.

住民들이 利用可能한 資源은 土地資源, 섬 주변 共同漁場의 沿岸資源, 그리고 深海資源 등이다. 土地資源은 섬 內의 10 萬坪의 척박한 땅이다. 開拓되기 이전에는 原始林으로 뒤덮혀 있어서 그

토양이 비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農事를 짓기 위하여 숲이 제거되고, 태풍, 계절풍, 기타 自然的 作用에 의하여 오랫동안 침식되어 토질층은 점점 불모지로 변하여 왔다. 그래서 현재의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섬 남단의 一部에만 農耕이 可能하다. 開拓 初期에는 보리, 조, 콩, 메밀 등 모든 作物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무모한 섬의 개간으로 토양의 침식이 深化되어 지금 경작되고 있는 作物로 고구마와 감자등 球根類가 주종이 되고 있다.

過去の 營農方式은 各 家庭 中心으로 행해졌다. 남자는 밭을 갈고, 파종하는 일을 맡고, 여자는 김매는 일을 전담하였다. 다만 수확기에는 男女 모두가 協同하여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耕作規模가 各 家庭이 自家 消費에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을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勞動力의 需要도 各 家庭 單位로 充當되었다. 따라서 協同勞動의 形態인 두레의 風習은 없었다. 그러나 품앗이는 흔히 행해져 밭갈이 하루에 3日間 김을 매어주는 交換勞動의 形態가 支配的이었다.

不毛地化한 現在에 있어서 農業에 종사하는 家口는 5 家口에 불과하다. 이 중 3 家口는 年老하여 잡수를 못하여 農事를 지어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2 家口는 부업으로서 農事를 짓고 있다.

土地의 所有形態는 共有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이 섬은 國有林野地로 되어 있었으나, 100 余年 前인 1883에 이주한 6人이 이를 개척하여 6人 名義로 登記되어 있었다. 그 후 1975年에 文敎部에서 M分校를 증축시켜주는 條件으로 學校 敷地의 寄附를 要求하였다. 最初의 登記名義人이었던 6人은 이미 死亡하였으므로, 섬 住民들은 6人의 後孫들의 同意를 얻어 M島를 住民들의 共同牧場으로 登記하면서 學校 敷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現在는 國有地인 燈臺 敷地와 郡所有地인 學校 敷地를 除外한 섬 全體가 共同 牧場으로서 住民의 共有地가 되고 있다. 이렇게 共同牧場으로서의 登記가 容易했던 理由는 우선 農事가 되지 않아 土地 自體가 重要視되지 않았고, 大部分의 農土가 牧草地化되어 土地利用 過程에서도 事實上 共有化하여 私有地라는 觀念이 稀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住民들의 人的 構成이 모두 初期 移住者들(姻戚이나 血族으로 얽혀져 있었던)의 後孫이라는 點도 看過할 수가 없다.

섬 住民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認定되고 있는 土地의 私有形態는 土地를 所有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土地를 使用·收益만 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서 내에 居住하고 있는 동안은 土地를 排他的으로 使用할 수 있으나, 他地로 移住하는 경우에는 이 使用權은 가까운 親戚에게 讓渡되는데, 이것은 持分の 讓渡라고 할 수가 있다.

소와 돼지를 주로 기르는 牧畜業도 飼料의 限界로 인하여 그 규모가 아주 零細하여 섬사람들의 重要的 生計 戰略이 되지 는 못한다.

위에서 본 것 처럼, 주변 해역은 水産資源이 풍부하다. 따라서 섬사람들의 主要 生計는 海産物 채취로 유지된다. 土地의 不毛化는 더욱 이 水産資源에 매달리게 하는 要因이 되어 왔다. 특히 近來에 와서 海産物의 輸出과 水協을 통한 流通構造의 改善 등으로 需要가 늘게 되어 海産物의 채취작업은 더욱 유리한 生計 方法이 되고 있다. 이 水産資源은 두가지 方法으로 利用된다. 즉 남자들은 어선을 利用하여 고기잡이를 하

며, 海女들은 近海에 잠수하여 海産物을 채취한다. 그런데 고기잡이는 포구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날씨의 변화에 대비하여 漁船을 물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1 ton 内外의 발동선 2척 밖에 없다. 따라서 漁業에 종사하는 人員도 6名 밖에 안된다. 이 두척의 각 배에는 배의 所有主人 船主와 船主 外의 2인이 동승하여 作業한다. 船主를 포함한 3人是 저마다 自己 所有의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가설할 때는 서로 協同하여 作業한다. 이 어부들이 自己의 그물로 잡은 고기는 물론 그 個人의 所有가 되지만, 船主에게는 잡은 어획량의 10%가 뱃값으로 돌아간다.

漁船을 利用한 고기잡이가 남자들만의 일이듯이 海岸에 서식하는 海産物을 채취하는 潛水業은 여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開拓 初期에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海産物이 풍부하였으나, 居住人口가 늘고, 또 農事가 不可能하여짐에 따라 住民들 모두가 이 채취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따라서 海産物도 稀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價格이 높은 海産物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깊은 물 속에서 오래 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일은 海水의 寒冷 자극에 강한 女性들이 전담하여 채취하고 있으므로, 生計活動에 있어서의 女性의 役割이 어느 地域보다도 重要視되고 있다.

여러가지 잠수도구를 사용하여 海底資源을 채취하고 있는 海女數는 18名으로 原住民 20家口 中 15家口의 婦女子들이다. 이들은 海女會의 會員들로서 스스로 정한 規約를 엄격히 지켜나가고 있다. 收益은 作業量에 따라 各者가 所有하게 되므로, 동료들 사이의 競爭力도 대단하다. 따라서 이 作業은 根本적으로 協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競爭속에서 個別的인 勞動에 의한다.<sup>3)</sup>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동료들 보다 좀더 깊이, 좀더 널리 헤엄쳐야 한다. 물론 作業時에는 海女 모두가 모여서 함께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協同을 위해서가 아니라, 全體 海女가 公平하게 資源을 채취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規約에 따른 것이다. 이런 規約를 어겨 혼자서 물에 들어 갈 때에는 海女會의 制裁를 받게 된다. 즉 密採取者는 水鏡 기타 잠수도구와 採取한 海産物을 압수당하고 一定金額의 罰金을 물게 된다.

以上的 잠수업은 海女들만의 作業分野에 해당되지만, 男女가 共同으로 參與下에 이루어지는 作業이 있다. 그것은 미역과 톳이 中心이 되는 海草를 採取할 때 행해진다.

톳은 70年代에 이르러 日本으로 加工하여 수출하게 됨에 따라 價格이 급등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요한 資源으로 부각되었다. 톳의 채취는 마을의 自治規範인 郷約에 의해 禁採期間이 정해져 있어서 이 期間에 密採할 때에는 上記한 경우와 같이 制裁를 받는다. 禁採期間이 設定된 것은 톳의 가장 성숙한 時期에만 採取하도록 하여, 마을 전체의 收益을 높이려는 데 있으므로, 이 禁採律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採取時에는 外地로 나가있는 住民들까지 참여하여 마을의 共同作業이 自發的

3) 李起旭, 上揭論文, P. 27.

으로 이루어 진다. 自發的으로 參與하게 되는 理由는 收益金이 參與者의 數에 따라 公平하게 分配 되기 때문이다.

미역은 종래에는 鬚의 경우와 같이 禁採期間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대한 違反의 경우에 같은 制裁를 받게 되었으나, 近來에 와서 養殖된 미역이 많이 나와, 이제는 미역의 商品價値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역에 대한 禁採律도 없어져, 미역의 채취는 任意대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취된 海産物은 自家消費되는 것이 아니라, 濟州道 所在의 S邑을 통해 賣買된다. 賣買方法은 水協을 통해 매년 入札價格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M島 收益의 主從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海女들의 收益이다. 이들의 收益으로 子女들은 外地의 中學校나 高等學校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家族은 收入의 상당한 部分을 저축하여 他地로 移住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M島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다.<sup>4)</sup> 島嶼民이 朴한 環境에 머무르는 것도 결국 그들의 서식지가 살아갈만한 與件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與件에 적응하기 위한 知慧를 짜모으기 때문이다.

M島 住民들의 分業方式은 性別分業이 支配的이다. 作業方式이 단순하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體力과 技術을 지니고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資源을 利用하는 作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島嶼의 生態의 特性에 의해 生計活動上 家庭內的 男女가 서로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있다.

島嶼의 自然的 特性은 男性들로 하여금 그들의 野外에서의 日터를 喪失하게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漁業에 종사하는 경우는 48명의 남자 중에 6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 所得도 저조하여 生計維持에 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소를 돌보는 일도 共同 放牧場이 있으므로 남자들의 役割이란 대단하지 않다. 따라서 大部分의 男子들의 하는 일은 家庭에서 아기보기, 돼지 사료 주기, 기타 장보기 등이다. 장보기는 男子가 兼을 수 없는 일의 하나이다. 生活必需品의 大部分이 S邑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한가한 男性들이 주로 맡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實生活에서 男性들의 役割은 重要視되지 않으나, 祖上을 위한 儀禮에서는 그래도 男性들의 權威를 유지시켜 주는 領域이 있다. 해야 할 重要한 일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술과 花투놀이로 보낸다. 특히 술은 마을내의 불화를 유발하는 要因이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習性은 결국 男性들로 하여금 일을 천시하는 경향으로 몰아갔고, 결국 女性들의 勞動力에 依存하는 扶養者로 변하였다.

家庭內的 成人 女性은 거의 海女이면서, 또 사실상의 家長이다. 家族의 生計도 이들의 勞力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男性들이 그 能力을 다할 日터를 喪失하고 扶養者의 처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勞動에 대한 別다른 關心을 보이지 않는데 反해, 女性들은 稀少資源을 利用하는 과정에서 女性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생기는 競爭心과 함께 적극적인 生活態度가 길러졌다고 할 수 있다. 家庭內的 일도 女性들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지만 가장 重要한 役割은 잠수업이다. 海女들은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언제건 바다로 나간다. 그리하여 하루에 5~6시간씩 水中 作業을 감당한다.<sup>5)</sup> 生計

4) 戶當年 平均所得이 250 만원을 넘고 있다.

5) 이렇게 과도한 勞動의 後遺症으로 잠수병에 시달려 괴로와 하고 있다.

活動에서와 같이 마을의 諸般 活動을 主導하는 것도 역시 女性이다. 資源의 保存을 위해 잠수기선의 침범을 막는 일, 他地로 결혼하여 나가는 女子로부터 냉정하게 入漁權을 박탈하는 일 등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강인한 決議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마을의 중요한 일이 形式的으로는 男子들에 의해 主導되는 듯 하나, 實質的으로는 女性들의 뒷받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여기서 海女會는 가장 積極的인 機能을 하고 있다. 要컨대, 生産活動에 나타나는 M島의 社會的 特性은 女性 中心의 採取 經濟的 社會의 形態를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M島의 自然的·經濟的 側面에서 地域共同體의 特性을 살펴 보았다. 이것을 江原道 原城郡 G面의 自然部落 PK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相反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선 PK는 農業이 中心이 되고, 生計의 바탕을 土地에 두고 있는데 反해 M島는 잠수업에 生計 유지의 근거를 두어 海底資源에 의지하고 있다. 勞動形態를 보면, PK와 M島가 다같이 自家勞動力에 의해 生産活動을 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같다. 그러나 前者는 두레 등의 協同勞動이 있으나 後者는 없다. 生産品은 PK의 경우, 自家消費가 이루어져 市場經濟에 대한 依存度가 대단히 낮으나,<sup>6)</sup> M島는 海產物은 대부분 商品化되어 그 依存度가 상당히 높다.

또 社會構造上 分業의 程度가 낮다는 것은 兩쪽이 같으나, 性別 分業이라는 側面에서는 相反되고 있다. 또 모든 生産活動은 協同에 의하는 것이 PK의 경우는 뚜렷하나, M島의 경우는 오히려 競爭的인 要素가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Ⅲ.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

漁村 共同體로서의 M島는 어떤 社會構造를 지녀, 그 構成員의 生活要求를 充足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社會構造 속에서 個人 相互間은 어떤 關係를 맺고 行爲(役割)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社會를 결속시키고 秩序를 유지하게 하는가. 이러한 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規則性을 보이고 있는 몇 가지 役割群의 pattern을 類型化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社會構造의 構成要素를 個人 相互間的 關係構造, 集團構造,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文化的 要素(價値觀, 認識體系 등)로 나누어 分析할 수가 있다.

6) 崔大權：「法社會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3, P. 156

## 1. 個人間的 關係構造

M島 住民들은 모두 12 개의 姓氏로 構成되고 있으나, 이들은 서로 血族과 姻戚으로 얽힌 親族 關係 내지는 親屬關係에 있다.

원래 婚姻한 夫婦의 出生子는 당연히 父系 親族集團의 一員으로 귀속된다. 또 婚姻하는 女性은 남편의 父系 親族員으로 편입되어 친정가족과는 이른바 「출가외인」으로 觀念하게 된다. 그런데, 이 M島 마을 住民들의 경우는 다르다. 開拓 初期에 移住한 住民들은 섬에 定着하는 過程에서 「누이 바꿈」으로 移住民 家族끼리 서로 通婚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相互間에 姻戚關係를 맺게 되어 복잡하게 얽혀졌다.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父系 親族 集團으로서의 機能이나 결속은 弱화되고 地緣中心의 親族組織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 親屬關係를 통해 마을 住民들은 相互 扶助하는 하나의 集團으로 統合될 수가 있었다. 住民들은 모두가 서로 삼촌, 조카 사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姻戚이든 血族이든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相異한 父系 親族 集團을 相互 연결하고 있는 것은 女性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女性들의 關係여하에 따라 親族集團의 親密度가 決定되고 있다. 이와 같이 婚姻을 통한 姻戚關係의 擴大로 父系親의 排他性은 弱화되고, 地緣中心의 結束力을 強化하는 共同體가 形成됨으로써 住民들은 相互間에 互惠인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M島는 이상과 같이 混姓 部落으로서 여러 姓氏를 가진 家族으로 構成되고 있으나, 血族 및 姻戚 關係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島內 住民 사이의 婚姻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 島外婚이 支配인 婚姻 樣相이 되고 있고, 通婚地域은 주로 生活圈의 領域에 속해 있는 T島와 S섬에 限定되어 있었다. 婚姻도 仲媒로 맺어지기 보다는 주로 戀愛로 맺어진다. 그래서 婚姻式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지연될 때에는 兩家의 父母들의 同意를 얻어, 약혼식을 올리고, 곧 同居生活를 하다가 적당한 時期에 결혼식을 하여 正式으로 夫부관계를 지속한다. 婚姻의 居住 樣式은 夫方에 기초를 둔 新居制다. 따라서 女자들은 結婚과 동시에 親庭을 떠나 남편의 家族에 편입된다. 혼인식과 함께 이 섬의 처녀들은 住民으로서의 資格을 喪失한다. 同時에 島嶼內의 모든 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權限도 박탈된다. 이 利用權을 다시 取得할 수 있는 경우란 남편이 사망하여 島嶼內에 再居住하게 될 때에 限한다.

혼인하는 아들들은 長男이건 아니건 모두 分家해야 한다. 혼인하면, 신혼부부는 새로운 거처지를 정하여, 獨立된 家庭을 꾸미고, 獨自의 生計를 維持해야 한다. 分家하는 경우에도 財產의 分配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理由는 우선 土地가 마을 住民 全體의 共有로 되어 있어서 利用權만이 서로 認定되고 있고, 또 土地가 生産性이 낮아 相續財產으로서의 意義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住民들의 支配인 家族形態는 核家族으로서 家口堂 平均 人員은 2.5名에 불과하다. 分家를 당



연한 것으로 받아 드리는 點에서 各 家庭이 核家族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核家族은 夫婦中心의 性別 分業에 의한 社會的인 最小의 勞動單位로서 가장 效率的인 生産手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 섬과 같이 海産物 採取를 主된 生計手段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協業은 要求되지 않는다. 擴大家族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잉여노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 點에서 核家族은 生計手段의 重要한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生計手段을 海底의 水産資源에 依存하고 있고, 그 採取는 女性의 잠수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잠수 技術을 갖지 못한 女子를 아내로 맞는 男性은 이 섬에서 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家族의 生計를 女性이 떠맡아야 하므로, 家庭 내에서의 意思決定의 主導權도 女子가 갖게 된다. 따라서 婚姻形態도 엄격한 一夫一妻制가 될 수 밖에 없다. 男子가 外地의 다른 女子와 가까와질 경우, 이 곳의 女子들은 離婚을 자청하여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섬에서 처첩을 거느리고 있는 男子란 찾아볼 수 없다. 子女의 選好意識을 보더라도 다른 地域처럼 아들을 重視하는 風潮는 상당히 쇠퇴되어 있다. 아들은 生活에 부담이 되는 食率이 되지만 딸은 生活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딸이 重視되고, 또 딸 많은 집안이 富자로 여겨지고 있다.

以上에 본 바와 같이 個人間的 關係構造에 초점을 맞추어 主로 家族形態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M島의 家族形態는 江原道의 PK 마을은 물론 기타 다른 地域과도 상당히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PK 마을 기타 農村에는 仲媒結婚이 압도적인데 비하여<sup>7)</sup> M島의 경우에는 戀愛結婚이 支配的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M島가 都市의 경우와 같이 他人의 行動에 無關心 내지는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後述하는 바와 같이 M島의 社會構造는 전형적인 共同體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마을 住民은 모두 「우리」 group을 형성하여 어느 個人이건 마을 사람들의 道德的 支持를 받지 못하는 個別行動을 하기는 힘들다.

M島가 夫婦中心의 核家族이라는 點, 또 家事에 관한 意思決定을 女子가 主導하여 가며, 一夫一妻制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點도 特記해야 할 것 같다.

## 2. 集團構造

土地를 포함한 主要 資源을 共有하고, 그 利用權을 均等하게 配分함으로써 内部集團의 統合을 이루고 있는 反面에, 外部集團에 대하여는 강한 排他性을 강조하는 M島의 社會構造는 典型的인 共同體의 特性을 띠고 있다. 親屬( kindred ) 關係로 맺어진 特殊한 親族組織, 禁忌事項, 그리고 儀禮活動 등은 모두 集團 構成員의 同質性, 所屬感, 紐帶感을 強化시키고 있다.

이 마을은 우선 紛爭解決의 單位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紛爭은 마을 自體

7) 崔大權, 上揭書, p. 169.

에서 解決하고 있다. 表面的으로는 평온하나, 수많은 葛藤, 軋轢, 紛爭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擴大되어 外部機關, 예컨대 警察支署나 法院 등이 介入하지 않으면 解決이 不可能한 紛爭으로 發展하는 일은 없다.

이 마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紛爭事件은 飲酒暴行이다. 暴行 自體는 물론 親告罪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을 連數소관으로 돌리고<sup>8)</sup> 마을 안에서 和解를 통해 解決하는 것이 보통이다. 警察支署에 刑事立件되는 일은 없다. 和解에는 親戚, 그중에서도 年老한 者가 나서서 중재한다. 이러한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해 결국 이 마을에 居住하는 것이 不可能하게 된다.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紛爭은 入漁權에 관한 問題이다. 入漁權의 侵害는 두가지 側面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外部에서 侵入해 들어오는 잠수기선의 問題이고, 또 하나는 資源利用을 둘러싼 마을 集團內的 問題이다.

共同體 內的 資源에 대한 外部의 介入은 철저히 排除되고 있다. 우선 資源保護를 위해서 잠수기선이 침범할 때는 海女들 비롯한 마을 全住民이 死力을 다하여 싸운다. 특히 海底資源의 保護는 이 마을의 死活에 관계되는 問題이므로 잠수기선의 침범은 외적의 침입과 同一視된다.

이 섬의 居民은 누구나 다 入漁權을 갖지만, 다른 地方으로 移住한 者는 如何한 일이 있어도 入漁權이 없다. 새로 轉入해 들어오는 사람은 一年 이상 居住하여야 하고 入漁料도 現物로 支拂하게 되었으므로, 이 마을로 移住해 오기가 사실상 어렵다.

入漁權이 없게 된 者가 慣習을 무시하고 入漁權을 行使하려는 試圖가 몇번 있었다. 어떤 海女가 다른 地方으로 혼인하여 移住한 後에, 다시 本島에 와서 海産物을 採取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 이 마을의 모든 海女가 入漁場에 나와서 그 海女에게 集團抗議와 함께 설득하여 결국 그 海女는 入漁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경우는 계속하여 入漁權을 行使할 것을 條件으로하여 外地人和 결혼한 海女가 있다. 入漁慣行의 엄격함을 잘 아는 이 海女는 入漁權이 박탈될 바에는 結婚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海女會에 호소하였다. 海女會로서는 딜렘마에 빠져 장시간 協議를 하게 되었다. 결국 그 海女の 幸福과 결혼상대의 生活能力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例外를 許用한 적이 있다.

農村 共同體의 경우, 在來의 農村灌溉施設인 泚와 관련하여 紛爭이 일어나지만,<sup>9)</sup> 아마 本島와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때의 紛爭은 上泚 受惠者와 下泚 受惠者와의 利害關係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島의 入漁關係는 個人 대 마을 全體의 問題로서 提起되

8) 暴行을 당하면 「맞은 농민 損害」라고 생각하여 告訴하려고 하지 않는다.

9) 崔大權, 上揭書, pp. 159~160

며, 이 入漁慣行의 rule이 깨지면 결국 이 漁村共同體는 存續될 수 없는 것이다.

本島에서 實質的으로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海女會이다. 資源은 限界가 있고, 이 限定된 資源을 利用하는 過程에서 本島의 社會的 形態는 어느덧 女性 中心의 社會가 되고 있는 것이다. 男性들은 力을 상실하여 生計의 解決에 중요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反해, 女性들은 採取作業에서 高조되는 競爭力에 의해 역척스러운 정도로 강한 作業意慾을 가지고 家庭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家庭에서의 中心的 役割은 마을의 公的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男性들이 中心이 되어 움직이는 洞會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利害關係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여 意思決定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특히 本島가 韓國의 最南端에 위치한 邊防지역이므로 政府에서의 크고 작은 元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住民 스스로가 섬을 開發하려는 意志는 弱화되고, 방문 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女性들의 모임인 海女會는 모든 會員의 意思決定이 용이하여, 마을의 일을 적극적으로 主導하는 行動組織이 되고 있다. 男性이 中心이 되어 거행되는 忌祭祀도 部落民 全體가 참여하는 일종의 共同儀禮로 변모되었고, 마을의 共同儀禮로서 가장 典型的이라고 할 수 있었던 酬祭도 近來에 와서 中斷되었다. 그런데, 女性이 中心이 되어 거행되는 「할망당祭」는 外部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 철저히 위기에 놓이면서도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住民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農村共同體에 있어서는 각 部落에 이른 바 「유지」級이란 階層이 있어서 마을의 公的인 일에 강한 「發言權」을 가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유지급의 地位는 學識이나 公的 地位, 예컨대 里長이나 區長과 같은 地位를 가지고 있다고 유지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유지」로 지목되는 住民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期待에 부응하여, 마을 일에 經濟的인 寄與를 행할 때에는 이에 相應하여 「마을 政治」에 있어서 그의 發言權이 커지고 또 유지로 인정받는다. 유지의 영향력은 마을 일에 寄與度가 클수록 上昇하게 마련이다.<sup>10)</sup>

以上과 같은 觀點을 M島에 비추어 본다면 유지級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海女會이다. 海女會는 마을의 公的인 일에 經濟的인 寄與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마을의 弊習을 禁止하는 機能도 한다. 파도가 일렁이는 大洋의 孤島에서 한가한 男子들의 重要한 道樂은 飲酒行爲이다.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男子들은 過飲에 빠져 서로 다투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過飲現象을 막기 위해 75년부터 島嶼 内の 酒類 販賣를 일체 禁止하기로 決議하였다. 이것을 주동한 것도 海女會이다. 이러한 海女會의 決定에 男性들은 잘 순종하고 있으며, 島嶼 內에서의 酒類販賣禁止 規則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10) 崔大權, 上揭書, p.166

### 3. 價値體系

本島가 지닌 限定된 海底資源을 올바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人漁愼行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共同體 內的 資源에 대한 外部集團의 介入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結束한다. 그러면서도 資源을 採取할 때는 서로 競爭한다. 強한 競爭心에 자극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진다. 그러나 海底 속에서의 作業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作業時에 이따금 만나는 상어 등의 큰 물고기의 위협과 짐수시에 질식사의 우려 등에서 오는 心理的 不安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採取社會에서 女性들간에 은연중 생기는 競爭心으로 야기되는 갈등이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女性들 사이의 갈등이나 심리적 不安 내지는 긴장을 풀어주는 宗教形態가 必要하게 된다. 여기에서 할망당(할머니堂)은 이러한 女性들의 心理的 慾求에서 形成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信奉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男性들이 主唱하는 宗教的 儀式인 祖上 儀禮나 部落祭가 이곳 M島의 새로운 環境에서 거행되는 동안, 本來의 儀禮形式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거나 消滅되었다. 그러나 女性들이 中心이 되어 거행되는 할망당祭는 外部로부터의 끊임없는 壓力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더욱이 住民들의 信仰의 核心이 되고 있는 것이다. 日帝末期에는 日本 官憲團에 의해, 그리고 解放後에는 1960年代부터 政府의 迷信打破施策에 따라 行政當局에 의해 여러번 堂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住民들은 파괴된 堂을 복구하여 할망神에 대한 儀禮를 지켜왔다. 특히 1976년에는 邑事務所의 公務員과 濟州市所在의 모 寺刹이 합세하여 佛像을 모시고 와서 이 섬 북쪽의 「망동산」에 세워진 할망堂을 부수고 그 자리에 佛堂을 建立하였다. 그리하여 할망神 대신에 부처님을 믿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住民들은 이 망동산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로 堂을 옮겨 계속하여 儀禮를 거행하고 있다. 住民들이 험난한 도시 환경에서 사고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할망神의 恩德 때문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 그래서 처녀로서 M島를 위해 犧牲당한 할망神을 정성스럽게 받드는 것을 그들의 義務로 생각한다.<sup>11)</sup> 女神이 모두를 위하여 犧牲한 것 처럼, 이 섬의 女性들도 家族을 위한 犧牲을 當然視한다. 할망神에 얽힌 神話의 內容도 女性들의 責任意識을 強調하는 계기가 된다.

女性들은 家庭에 어떤 不祥事가 發生하였거나 불길한 꿈을 자주 꾸게 되어 心理的 不安이 高調되었을 때에 堂을 찾는다. 不吉한 事件이 생기는 것은 女神의 기대에 어긋난 行動의 所致로 생각한다. 그래서 神의 노여움을 풀고 도움을 청구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면서 神의 환심을

11) 開拓 初期에 移住民들의 원만한 배깅을 쓰기 위하여 이 섬에 홀로 남겨져 餓死할 수 밖에 없었던 어느 식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할망堂 神話의 유래이다.

되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할망堂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儀禮는 女性 個個人이 처한 心理的 葛藤이나 不安을 해소시켜 生計의 責任을 履行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한다. 또 이 儀禮는 女性과 더불어 전 住民들에게 共同的 信念을 갖게 하므로, 住民間의 同質感을 形成하고 互惠的 關係를 強調하는 社會的 裝置가 되고 있다.

M島의 祖上 儀禮라고 하여 다른 곳의 그것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섬에 移住하여 생활하는 동안, 儀禮의 性格은 상당히 變貌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機能的인 面에서의 變化이다. 一般的으로 祖上 儀禮는 父系 親族들로 하여금 그들의 共同 祖上을 中心으로 結束시키는 데에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儀禮에 참석하는 범위도 限定되고 있다. 그러나 本 島의 경우는 다르다. 즉 儀禮時에는 마을의 모든 住民들이 義務的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儀禮 本來의 目的과는 다른 것이다. 父系 親族의 유대강화의 機能을 갖는 것이 아니라, 部落民 全體의 結束을 도모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이 곳의 特殊한 親族 構造에도 그 原因이 있다.

祖上 儀禮는 葬禮式, 朔望, 大小祥, 그리고 忌祭祀가 있다. 이러한 儀禮는 1965년에 鄉約을 明文化 할 때에 當時의 政府 施策을 따르고 있으므로 매우 簡素한 形態로 되고 있다.

우선 葬禮式을 보면, 모든 住民이 一切의 作業을 中斷하고 故人을 追慕하며 埋藏하는 일에 參與한다. 이 때에는 海女들의 潛水作業은 물론, 마을의 共同作業인 듯이나 미역 採取까지도 葬禮式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다.

朔望이나 大小祥은 鄉約의 規定에 따라 住民들의 참석은 금지되고, 直系 子孫인 喪主만이 故人을 위해 朝夕으로 식사를 올리는 節次로 끝난다.

祖上 儀禮에서 住民들이 가장 重要視하는 것은 忌祭祀이다. 5代孫 止祭의 原則을 따르고 있는 이 곳의 忌祭祀는 전 住民이 참여하여 杯를 올린다는 點에 特色이 있다. 그리고 罷祭 前까지 모든 住民이 드나들며 제물로 마련된 음식을 대접받는다. 또 이 날에는 마을에서 販賣가 禁止된 소주도 나온다. 그러나 이 때에도 두 되 이상의 술이 나오지 못하도록 海女會의 制止를 받는다. 忌祭祀는 자주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마을내에 빈번한 忌祭祀에서 住民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飲福을 하는 일은 住民들을 親族 單位로 갈라 놓지 않고 하나의 共同體의 構成員으로 結束시키는 重要的 役割을 한다.

#### Ⅳ. 漁村共同體의 法規範

모든 社會體制는 「憲法」내지는 基本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成文形式으로 되기도 하며 不文形式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參與者들이 함께 行爲하기 위한 基本的 規則을 提供한다. 이러한

「法的」 뒷받침이 없으면, 構成員間的 相互作用이 秩序化되지 못하여 그 體制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sup>12)</sup>

M島 住民들은 이 섬에서 生活하고 生計를 유지하기 위한 最少限의 基本的인 規範을 維持·發展시키고 있다. 이것은 本島가 지니고 있는 鄉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 鄉約은 行政官廳의 關與 없이 이루어 졌고, 또 지켜져 왔다. 이 鄉約의 主要內容은 앞에서 이따금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總體的으로 살펴보고, 制定法과의 比較, 기타 이것이 이 社會의 統合을 위해 어떻게 機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本島는 1883년에 開拓되어 10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農耕 및 漁業을 병행하다가, 生態界의 變化로 어느덧 海産物 採取를 主要生計의 手段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海産物을 採取함에 있어서는 舊來의 慣習에 의해 그 秩序가 유지되어 오다가 1965年 2월에 이 慣習을 土台로 「鄉約」이라는 規約를 만들었다.<sup>13)</sup> 이 鄉約은 總 64 個條 附則 5 個條로 構成되고 있다.

第一章 總綱에서는 鄉約의 目的, 任員의 任務와 任免, 任員의 報酬關係를 규정하고 있다. 鄉約의 目的을 「地方의 建設과 그 組織 및 秩序를 維持하고 島民의 福利 增進에 寄與함」에 두고 있고, 任員으로서 班長 1人,<sup>14)</sup> 總務 1人, 內務 1人, 그리고 外務 1人을 두고 있다. 班長은 鄉會의 多數決에 의해 選出되며, 鄉員을 統率하고 모든 行政的 事務를 擔當한다. 役員 즉 總務, 內務, 外務는 班長의 諮問機關임과 同時에 補佐機關이다. 이들도 역시 鄉員의 多數決로써 選出되며, 班長을 推薦하는 權限을 갖는다. 任期는 班長과 같이 모두 一年이다. 役員들은 班長과 똑같은 一定額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班長을 보좌하고, 자문하며, 추천하는 權限을 行使함으로써 견제하는 機能까지도 갖고 있다. 이들은 각己 政府機關의 財務部, 內務部, 外務部에 비견할 수 있는 公式機構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마을 일을 自治的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機構이다. 보수는 물론 鄉員의 入漁料에서 충당된다.

鄉約 第二章에는 海産物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海産物은 住民들의 絶對的인 生業의 對象物이 된다는 點에서 本章은 M島의 鄉約의 要諦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第二章의 規定을 올바로 遵守하지 않는 경우에 罰則을 두고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섬에 살 수가 없고, 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強한 效力을 가지고 있다. 이 規約은 65年度에 와서 갑자기 設定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慣習으로 내려온 것을 明文化 시킨데 불과하다.

海産物 中 미역, 툇, 김에 대하여 各各 따로 禁·解禁 期間을 두고 있다. 다만 미역은 最近에 와

12) Gerald R. Leslie 外 ; Order and Change ( Introductory Sociology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665.

13) 高翔龍, "韓國의 入漁權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6. p.104

14) 오늘날에 와서는 里長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졌다.

서 價格의 下落으로 그 商品的 價値가 없기 때문에 放任되고 있다. 이 期間을 철저히 履行할 수 있도록 監視規定을 두고 있다. 즉 班長의 指示에 의하여 役員이 監視를 하게 되는데, 監視成績이 不良할 경우에는 鄉會의 決議에 따라 그 報酬를 削減할 수도 있는 것이다.

許採期間이라고 하여 아무나 海産物을 採取할 수는 없다. 本島의 居民은 누구나 入漁權을 가지고 있지만, 그 資格은 여러가지로 制限되어 要件이 엄격하다. 우선 툇과 같은 海産物을 채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本島에 一年 이상 居住하면서 負役動員 및 公共施設에 要求되는 義務를 履行하고 난 後에 現物로 入漁料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섬에 居住해야 하는 公務員에 대해서는 例外이다.

住民이었다고 하더라도 他地方으로 轉出된 경우에는 入漁權이 박탈되는 것은 앞에서 記述하였다. 더 나아가서 海産物을 採取한 後에 出他하여 本島에 居住하지 않는 경우에도 入漁權이 없다.<sup>15)</sup> 入漁權을 代理하여 行使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으며, 入漁權者는 役員會議에서 決定하여 年末의 鄉會에서 發表하게 되어 있다.

本島에 居住하여 入漁權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老弱者로서 採取를 할 수 없는 者를 위해서 一定의 海岸을 割愛하고 있고, 또 70才 以上の 老人에게는 賦役도 免除하고 있는 규정도 特記할만한 일이다. 이것은 教師 등 本島를 위하여 奉仕하고 있는 公務員에게는 당연히 入漁權을 주는 規定과 함께 社會福祉의 人 側面을 상당히 考慮하고 있다.

入漁權者가 許採期를 어기고 密採取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現物은 물론 採取도구까지 빼앗기게 되며, 상당한 額數의 罰金を 그것도 10日 以内に 「賠償」하여야 한다. 2回 以上の 密採取者는 2倍의 罰金を 賠償한다. 密採取者가 老人이나 어린이였을 경우에는 그 世帯主를 「犯罪者」로<sup>16)</sup> 看做하여 賠償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入漁資格이 없는 者가 入漁했을 경우에는 現物 및 道具만 沒收한다. 여기서 採取道具를 압수당한다는 것은 生活의 武器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운 處罰이 아니라는 것을 注意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그의 生存과 直結되는 것이다.

入漁慣行은 툇과 같은 海草의 경우에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진북이나 소라와 같은 패류의 採取에도 적용된다. 이 패류의 採取야말로 海女들의 主所得源이 된다.<sup>17)</sup> 이 패류의 채취는 사시철에 걸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禁採期間이 따로 없다. 그러나 入漁權者만이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共同漁場에서의 入漁形態는 共同入漁와 自由入漁로 구별할 수 있는데, 툇이나 우뚝가사리의 채취의 경우는 共同入漁하여 채취한다. 툇은 共同으로 판매하여 그 收益金이 均等分配가 된다. 이것을 제외한 具類 또는 海藻類는 自由롭게 入漁하여 自由競爭으로 채취하며, 그 收益은 個人 所得이 되는 것

15) 居民일지라도 許採期間만을 이용하여 來島하는 경우를 豫想하고 있는 것 같다.

16) 違反者가 아니라 「犯罪者」로 表現하고 있는 것은 이 密採取者를 窃盜犯과 同一視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81年度 水協 支所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불매 해녀 1人의 所得은 月 30~40만원이 넘는다.

이다. 이러한 慣行은 M島에 限한 것은 아니다. 濟州道 연안의 全域에 걸쳐 마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慣行들이 옛부터 행해져 왔다.<sup>18)</sup> 다만 M島가 다른 곳에 비하여 이러한 慣行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M島는 거의 完全하게 「社會的 單位(Social unit)」로서 結束되어 있는 곳이다.

M島의 法規範을 農村 共同體인 PK 마을 등과 비교하여 보면, 個人을 초월한 共同體 規範과 個人間的 去來가 構造的으로 명확히 區分되지 않는 點, 個別的인 行動에 대하여 마을 全體가 하나의 陪審團의 役割을 하고 있어 個人的 逸脫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sup>19)</sup> PK 마을과 같은 點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마을 住民들은 서로 인척과 친족으로 밀접히 關連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生存을 위해서나, 그 規範的인 支持를 위해서 대단히 相互依存的이라는 점에서도 農村 共同體와 같다. 그런데 이 點은 農村 共同體보다도 훨씬 強度가 높다. 入漁慣行을 어긴 者를, 犯罪人으로 취급하여 賠償시킨다는 點, 장례식 및 忌祭祀 때의 扶助가 義務化되고 있다는 點에서 農村 共同體의 規範보다 훨씬 「法的」이다.

農村 共同體는 儒敎的인 規範과 未分化된 상태라고 한다.<sup>20)</sup> 물론 M島도 祖上儀禮 등에 온 마을이 참여한다는 點에서 그 잔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祖上崇拜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結束시키는 共同의 儀禮로 그 機能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結束은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強한 排他性을 띠지만, 그것은 단순한 「덧세」가 아니라 限定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利用한다는 戰略에서 비롯한 點에서 農村 共同體의 그것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 V . 結 語

以上과 같이 漁村 共同體의 典型인 M島 마을에 관한 規範生活의 特色을 살펴보고, 그 法規範이 拘束力을 갖게되는 根據를 살펴 보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國家法의 關與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國家法이 완전히 排除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鄉約을 보면 冠婚喪祭가 당시의 國家施策을 완전히 反映시켜 規範化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儀禮가 간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施策을 盲從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만만큼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生活環境이 그만큼 그들을 單純·素朴하게 만들었

18) 金斗熙·金榮敦; “海女漁場紛糾 調查研究”, 「論文集」 14집. 濟州大學校, 1982. p. 32.

19) 崔大權, 前揭書, pp. 182 ~ 186.

20) 崔大權, 上揭書, p. 183.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家施策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儀禮를 알맞게 변용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推測할 수 있다. 이런 點에서 그들의 規範生活은 環境에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合理性이 內在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따라서 法規範이 實效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階層의 觀念形態가 支配的인 要素로 作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흔히 島嶼民의 生活을 「낙후성」과 「정체성」으로 보고, 그 原因을 前近代的인 共同體의 生活樣式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前近代的인 慣行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제적인 方法으로 行爲를 選擇하고 있는 것이지, 도서지역의 住民들이라고 하여 맹목적으로, 傳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M島의 文化的 特性인 核家族의 類型, 오늘날까지 土地와 資源을 共有 내지는 總有하여 利用하는 慣行, 그리고 生計活動에서 나타나는 女性中心의 社會的 特性은 결국 環境과의 긴밀한 函數關係속에서 그들의 適應戰略의 하나로 채택하여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法規範도 環境의 特性과 이러한 特性을 利用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適應戰略의 一環으로서, 필수적인 選擇의 精髓라고 할 수 있다.